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직무와 권한)

- ①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 해임에 대하여 결의한다.
- ④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제 4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5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의무와 책임)

-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④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 3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구성)

-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2 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⑤기타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제 6 조(위원장)

- ①위원회는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종류)

- ①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 회 개최한다. 단, 부의사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한다.
- ③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소집권자)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소집절차)

-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0 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11 조(부의사항)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 제기 결정여부
-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변경,해임에 대한 제청 승인
-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9) 감사계획 및 결과
- (10)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 (1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13)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4) 내부감사부서(내부회계담당) 구성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15)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 (16)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7) 회사가 외부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8)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제 12 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①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 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5 조(간 사)

①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경리팀장이 이에 임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 4 장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제 16 조(외부감사인의 선정)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②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 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외부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어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 월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년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외부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18 조(외부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 개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년도 종료후 3 월이내에 위원회의 해임요청을 받은 외부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외부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외부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2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외부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 19 조(전기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직전사업년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외부감사인 (“이하 전기외부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 18 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인 해임을 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외부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새로운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 2 주 전까지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독립성확보)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21 조(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 22 조(감사록의 작성)

-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21)

이 규정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은 증권거래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및 배점			
가.입찰가격	10점			
나.감사품질	90점	감사업무 수행팀 역량	감사 경험	10
			산업 전문성	10
			징계 여부	10
		회계법인의 역량	품질 관리	10
			법규 준수	10
			과거 업무 적정성	10
		감사 수행절차 적정성	투입 시간	10
			감사 계획	10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	10